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모집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인혜재가노인복지센터

제 1 조 (사업의 목적)

인혜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는 장기요양 이용자 가정에 방문요양보호사를 파견시켜 안정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체 활동지원 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둔다.

제 2 조 (사업의 종류)

센터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업무를 수행한다.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 3 조 (이용 대상)

급여 이용 대상은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제 4 조 (이용자 모집방법)

본 센터의 방문요양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모집
 - 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
 - 나. 자체 운영 홈페이지(네이버블로그)
 - 다. 그 외 기타 매체(SNS) 활용
2. 오프라인 경로 홍보·모집
 - 가. 지역 내 게시판을 활용한 홍보물(전단지, 리플렛 등) 및 안내자료 배포
 - 나.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 다.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 라.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이용자의 주변 권유, 지역 내 대상자 직접 발굴

제 5 조 (계약 목적)

센터와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센터의 사업목적을 달

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계약)

센터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3. 센터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를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 7 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기간은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센터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나.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 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 라. 기타 계약 당사자 간 필요한 경우
4. 제3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정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5.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변경계약서(사유서)를 작성한다.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나.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해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8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2. 그밖의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사항으로 정한다.
 - 가.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

- 로 센터와 계약한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한다).
- 나.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급여기준)

1. 센터가 제공하는 급여의 한도 및 비용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해당연도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부담한다.
 - 나. (장기요양 급여비용)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해당연도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이때 야간·심야·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 비용이 가산될 수 있다.
 - 다. (본인부담금의 산정)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 선정기준에 따라 일반, 감경, 면제대상으로 나뉘며 각각 급여비용의 15%, 9%, 6%, 0%를 계산한다.
2.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 본인부담금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받으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부담금은 공단에 청구하여 받는다.
3. 방문요양 수가산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매년 공시되는 관련 고시에 따라 정한다.
4.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제 10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가.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다.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가. 급여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다.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통보 의무
 -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제 11 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나. 센터가 방문요양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 또는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라.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 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등급외자로 변경되는 경우
 - 다.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인 경우
 - 라. 급여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 또는 직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및 급여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은 다음과 같다.
 - 가.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제11조 2항에 해당하는 계약해지요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한다.
 - 나. 센터는 제11조 3항에 해당하는 계약해지요건이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다. 이용자의 신변상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단,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라.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